

#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2008. 7



한국증권금융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증권금융기관으로, 증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특정업무를 수행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1955년 10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증권시장에 대한 자금과 유가증권의 공급,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객예탁금 관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사주제도 지원,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예금 및 대출업무 등이 있습니다.

## ■ 증권산업 지원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유통·중개 등에 필요한 자금 및 각종 서비스를 증권회사, 증권관련기관 등에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고객예탁금 관리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의 모든 고객예탁금을 전액 재예치 받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우리사주제도 관리

우리사주제도를 홍보하고 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지도하며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예탁 받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는 한편, 우리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사주 전담 관리기관입니다.

## ■ 일반고객금융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과 높은 금리와 함께 공모 및 실권주의 청약으로 주식의 매매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예금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일반고객의 재테크를 돕는 예금 및 대출

### **우리아주취득자금 및 우리아주담보대출**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우리사주제도 지원 금융기관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담보로 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하여 드립니다.

### **사주조합예금**

우리아주조합이 예탁하는 적립금 및 기금을 예치하는 상품으로 하루만 맡기셔도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

### **증권담보대출**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을 담보(부동산은 부담보)로 법인 및 개인에게 증권투자자금이나 가계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여 드리는 상품으로 한도거래방식입니다.

☞ 인터넷([www.ebank.ksfc.co.kr](http://www.ebank.ksfc.co.kr))을 통한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 **실권주청약예금**

실권주 등 공모주식의 청약대행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청약증거금도 대출해 드리는 편리한 예금으로서 예금이자와 배정주식의 매매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사주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플랜설계서비스

### □ 도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Test)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도입 목적에 맞추어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설계해 드립니다.

### □ 취득자금 조달방법 조언(Financial Service)

내부 적립, 외부 차입 등 자사주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당사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귀사의 제도도입 목적에 맞는 맞춤형 대출설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 준법서비스 제공(Compliance Test Service)

제도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법규 준수를 위해 규약 및 각종 계약서 등을 검토해 드립니다.

### □ 비상장회사 환매수 프로그램

- 기업평가 서비스(ESOP Valuation) 제공
- 환매수프로그램(Repurchase Plan) 설계

### □ 기타 서비스

- 우리사주 매도대행, 매도상환 서비스 제공
- 조합원 교육서비스(Education Service)

## 서 문

우리사주제도는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비상장 자·손자회사인 경우에는 지배회사. 이하 같음)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게 함으로써 자본 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 분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기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후반부터로, 주로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시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근로자의 재산 형성 등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근로자가 자기계산으로 우선 배정주식을 취득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우리사주제도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제도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부분을 도입 적용하여 제도를 대폭 개선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공포(2002년 1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법령도 대폭 개정하여 우리사주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법 제정 이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수집·정리하여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취득에 따르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

입하는 한편 조합원의 자격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으로써 이제 제도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로는 개선된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 근로자, 기업, 주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문 수탁기관으로서, 조합의 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 근로자 및 제도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알기 쉽게 우리사주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사주제도 및 실무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의 우리사주지원센터 홈페이지([www.ceso.or.kr](http://www.ceso.or.kr), [www.esop.re.kr](http://www.esop.re.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한 국 증 권 금 융 주 식 회 사  
우리사주지원센터장 박 성 찬

## - 목 차 -

<b>제1편</b>	<b>우리사주제도란</b>	1
제1장	의의	3
제2장	특징 및 기본 요건	4
제3장	목적 및 효과	6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7
2.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8
<b>제2편</b>	<b>제도의 발전 과정 및 체계</b>	11
제1장	발전 과정	13
제2장	제도의 체계	16
1.	지원 체계	16
2.	기본 운영 구조	18
<b>제3편</b>	<b>우리사주조합과 주요 업무</b>	
제1장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21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22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27
3. 우리사주조합 기금 .....	30
4. 벌칙규정 .....	32
제2장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	33
1. 자사주의 취득 .....	33
2. 자사주의 배분 및 배정 .....	37
3. 자사주의 예탁 .....	38
4. 자사주의 인출 .....	40
5.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	41
6. 자사주의 환매수 .....	44
제3장 주요세제 및 금융 지원 .....	45
1. 주요 세제 지원 내용 .....	45
2. 금융 지원 .....	50
제4장 우리사주제도 운영 현황 .....	51
1.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	51
2. 우리사주 주식 예탁 현황 .....	51
3. 연도별 제도 운영 현황 .....	51

제4편 질의·응답(Q&A) ..... 53

**부 록**

I. 관련 법규 ..... 75

    1. 근로자복지기본법·령·규칙 초록 ..... 76

    2. 증권거래법·령 초록 및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 140

II. 표준 규약 ..... 144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제1장 의의

제2장 특징 및 기본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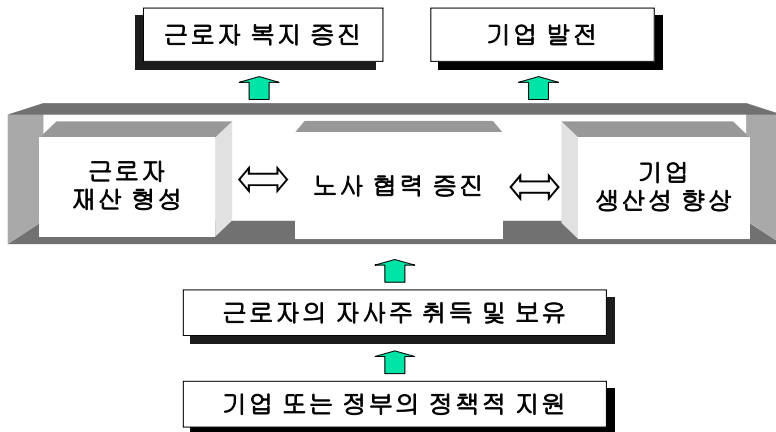
제3장 목적 및 효과



# 제1편 우리사주제도란

## 제1장 의 의

- 우리사주제도라는 말은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기업 또는 정부가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종업원지주제도라고도 함) 또는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임.



- 우리사주제도는 처음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 보상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자본 소유의 분산 및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 편중 현상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의 효용성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개발되었음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본가에 비해 축적된 재산이 많지 않

은 저소득층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본 참가 수단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근로자의 자본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다양한 세제 및 제도상의 지원을 하고 있음

- 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성장·발전에 의한 기업 가치 증대를 통한 자본소득의 증가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이룰 수 있어 미국·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사주제도는 기업 또는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부의 공평 분배와 자본 소유의 분산 등을 유도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평성 달성에 기여하여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제2장 특징 및 기본 요건

- 우리사주제도는 참가자가 회사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취득 대상은 자사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위해 기업 또는 정부가 특별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근로자도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

의 참가자가 될 수 있음

○ 우리사주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시행되어야 함. 회사가 능동적으로 제도를 수용할 때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제도를 시행하여야함.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계산에 의해 자사주를 매입·보유하는 경우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이기는 하지만 본래 의미의 우리사주 제도라고는 할 수 없음
- 자사주의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고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을 제고시켜 노사간의 협력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 제도적으로 일정한 상설기구가 구성되어야 함. 자사주의 취득·보유가 계속적·장기적이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일정한 상설기구를 구성하여야 함
- 회사와 정부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즉,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회사는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거나 자사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고, 자사주의 취득·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등 특별한 편의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이와 같은 지원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자사주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제3장 목적 및 효과

- 우리사주제도는 경제민주주의와 자본 대중화의 달성을 이론적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데,
  -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자본이 소수에 편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소수 자본가가 다수의 근로자를 지배하는 형태로 진전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노사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함
  - The Ownership Solution의 저자인 Jeffrey R. Gates 등 많은 사람들은 우리사주제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유 구조 개편의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함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 자본 소유의 분산, 부의 공평 분배 등을 통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자본 참가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노사 협력 관계를 도출해 내는데 정책적 목적이 있음

#### 1.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제27조)
- 우리사주제도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적과 효과를 갖고 있음

##### 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 근로자는 자사주를 보유함으로써 근로소득 이외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얻는 한편,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한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재산 형성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나. 근로자 경영 참여

-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각종 의사표시를 하며, 장부 열람권 행사 등을 통해 내부 감시자로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견제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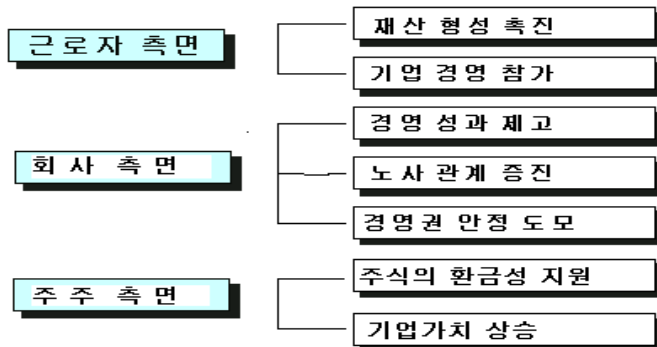
다. 노사 협력 제고

- 근로자는 주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경영진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노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라. 기업 생산성 향상

- 근로자가 자기회사에 대해 주인 의식과 애사심을 갖고 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따라 생산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2.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 가. 근로자 측면

- 주주로서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 발생 등 임금소득 이외의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자본소득 증가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
- 경영 참여에 의한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써 건실한 기업 성장을 유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 도모
- 근로자의 출연금과 회사 출연분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장기 보유 시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
- 분사, 상속인의 기업 경영 포기 시 근로자의 기업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자리 보전에 기여

#### 나. 회사 측면

- 우수 근로자의 유치·보존, 근로자에 대한 동기 부여, 근로자의 주인의식과 애사심 고취 등 기업문화의 변화를 통해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
- 노사 분규 예방 등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 임금 교섭의 탄력성 확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
- 근로자의 주식소유로 근로자가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효과

- 근로자 보유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방지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음
- 회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금전 출연 시 법인세 손비 처리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 주주 측면

- 비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현금성을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유통시장을 제공함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효과가 있음

## 제2편 제도의 발전 과정 및 체계

### 제1장 발전 과정

### 제2장 제도의 체계



## 제2편 제도의 발전 과정 및 체계

### 제1장 발전 과정

-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효시는 1958년 10월 (주)유한양행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노사 협력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자사주를 지급한 것임
  - 동 사는 간부들에게는 공로주를 주고, 사원들에게는 희망자에 한해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되 그 대금을 상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음
- 이후 몇몇 기업에서 단편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사주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 1968년 11월 22일 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한 이후부터 임
  - 1972년 12월 30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 및 「기업공개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선배정을 일반공모·유상증자 시로 확대함으로써 기업공개 예정법인도 공개주식의 10%를 근로자에게 우선배정토록 함
- 우리사주제도가 국가적 차원의 공적 제도로서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 1974년 5월 29일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그 대책의 하나로 동년 7월 13일 “종업원지주제도 확대 실시 방안”이 발표된 이후이며, 동 방안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시행되었음

- 유상증자 시 10%의 우선배정을 비공개법인까지 확대
  - 근로자 취득 주식의 관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 근로자 취득 주식의 의무 예탁제 시행(공개법인 - 1년간, 비공개법인 - 상장 시까지)
  - 세제지원(저축금액 세액공제제도 도입 : 저축금액의 5% 세액 공제)
-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권시장의 활황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근로자의 욕구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주인 의식을 제고하고 재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 1987년 9월 15일 “종업원 지주제도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자사주 우선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취득자금에 대한 저축금액 세액공제도 저축액의 15%로 확대하였음
- 그 후 우리사주제도는 증권시장과 국가 경제의 성장·침체 등에 따라 표출되는 당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예탁기간과 세제 혜택 등을 수시로 조정하여 왔음
- 1988. 6. : 예탁기간 연장(1년→퇴직 시까지, 특별 인출:3년 경과)
  - 1993. 7. : 예탁기간 단축(퇴직 시까지 → 7년, 특별 인출:2

년 경과)

- 1994. 12. :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폐지
- 1999. 8. : 의무예탁기간 단축(7년 → 1년, 1999년 말까지는 3년)
- 2001년에는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존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한계가 표출되어 동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사주제도의 기본적 법률이 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공포함(2002. 1월 시행)
  - 회사·주주의 무상출연 및 우리사주조합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함
  - 장기보유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상장법인도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2002. 2. 9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비상장 자·손자회사의 근로자 참가 허용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개정(2002. 3. 6 재경부장관 고시 2002-6호)
- 2005. 10. 1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 2002년 사업주의 무상출연 및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되어 조합원의 재산손실 위험이 상존함. 이의 개선

을 위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 지주회사의 증가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 지주회사의 비상장 자·손자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합운영의 개선을 위해 기업의 해산 사유 발생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기준 마련,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배정방법 개선(가배정 절차 폐지,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 등

○ 2005. 12. 9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상장법인의 조합차입 허용
-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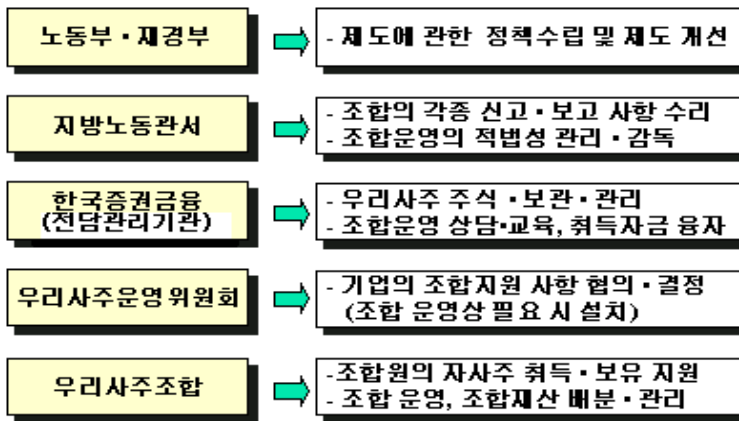
## 제 2 장 제도의 체계

### 1. 지원 체계

○ 노동부, 금융위원회

- 노동부 본부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담당
- 금융위원회는 증권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우선배정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



○ 지방노동관서

- 우리사주조합 설립 신고, 운영 상황, 이전, 해산 보고 등의 수리
- 우리사주조합 운영의 적법성 확보, 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담당

○ 한국증권금융(주)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보관 및 관리, 우리사주조합 관련 용자 업무
- 우리사주조합 설립 안내, 우리사주 담당자 교육 및 실무 안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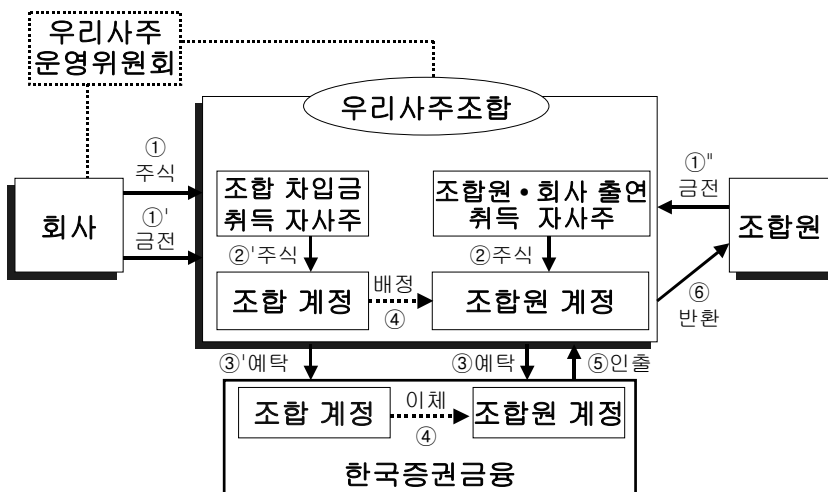
○ 우리사주조합

- 조합원, 대의원, 조합 대표자,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지원
- 조합 규약의 작성, 변경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

○ 우리사주운영위원회

- 사업주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각 동수의 위원으로 하되,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 사업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협의·결정하고, 그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

2. 기본 운영 구조



가. 회사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 취득

- 자사주의 출연 : 출연된 자사주는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하여 예탁한 날로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그림 ① → ② → ③)
- 현금의 출연 : 출연자금은 조합 기금에 적립되며, 당해 회계연도에 적립된 기금은 다음 회계 연도 개시 후 6월까지의 자사주 매입 또는 회사가 상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하며,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에는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한 날로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그림 ① → ② → ③)

나.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 취득

- 출연금은 자사주 매입 전까지는 조합 기금에 적립되며,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월까지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고, 취득한 자사주는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1년간 의무예탁(그림 ① → ② → ③)

다. 회사 상환 차입형에 의한 자사주 취득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상환 약정 및 보증 등으로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배정하여 예탁한 후 회사가 무상 출연한 자금으로 조합이

차입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  
정으로 이체한 후 1년간 의무예탁

## 제3편 우리사주조합과 주요 업무

제1장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제2장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제3장 주요세제 및 금융 지원

제4장 우리사주제도 운영 현황

## 제3편 우리사주조합과 주요 업무

### 제1장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가. 조합설립의 임의성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음

##### 나. 조합 설립 가능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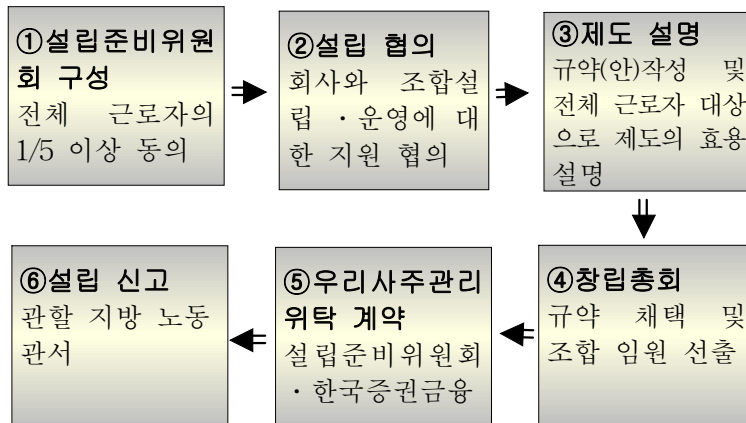
-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다. 조합의 성격

-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비법인 사단 : 단체의 실질은 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됨

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



①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② 조합 설립에 관해 회사와 협의

- 회사의 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조건
- 회사의 출연 계획 및 자사주 배정 등
-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 규약(안)의 작성

- 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법규로, 그 규정이 법령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을 구속함

- ※ 조합 규약의 필수적 기재 사항은 ①목적 ②명칭 ③주된 사무소 및 분소의 소재지 ④조합의 임원에 관한 사항 ⑤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⑥조합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⑦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사항 ⑧예탁 주식의 인출에 관한 사항 ⑨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등임

#### ④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조합원 모집

-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의 설립 목적·효용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조합을 구성함

- ※ 우리사주제도 및 규약(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총회에서 확정되는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함

#### ⑤ 조합 창립총회 개최

-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조합 규약을 확정하고, 확정된 규약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조합 대표자(이사 겸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함

⑥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⑦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신고

- 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후 3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설립을 신고하고, 조합대표자에게 사무를 인계함

※설립 중의 조합은 설립 후의 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설립 후의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설립준비위원회와 회사간의 협의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관리위탁계약 등의 효력은 설립 후 조합을 구속하고 조합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우리사주조합 설립 일정표(예시)

일정	진행절차	주관처	대상처
D-30	우리사주제도 도입 검토 및 한국증권금융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설립 추진반	
D-28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D-23	규약(안)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D-20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회사와의 협의	"	근로자, 회사
D-15	조합 가입 신청서 접수	"	희망 근로자
D-13	창립총회 개최 공고 (개최일 1주간 전)	"	적격 근로자
D-5	창립총회 개최	"	"
	대의원 선임(선택적 사항)	"	조합원
D-1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신청 및 체결	"	수탁기관
D	설립 신고 및 수탁기관에 통지	"	지방노동관서
D+1	자사주 취득 및 우리사주조합운영위원회 결성 등 우리사주조합 업무 추진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전 조합원 · 회사

##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가. 조합의 운영

-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 조합 대표자 등 조합의 운영 주체는 각자의 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함

### 나.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배회사의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음
  - 관계회사란 지배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자회사)와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손자회사)를 말함
  - 일정한 요건이란 관계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동의하는 경우를 말함
  -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①주주총회에

서 선임된 임원 ②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 중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③일용 근로자 ④최대 주주와 혈연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인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 다. 조합의 기구

##### (1) 조합원총회(대의원회)

-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①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⑥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
- 조합은 규약의 정함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함
- 조합의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다만, 의결사항이 없고 조합규약에 조합 운영상황 보고서의 공고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조합운영상황 보고서의 공고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음
- 조합원(대의원) 1/5이상이 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3주 이내에 조합원총회(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조합 대표자(조합장)

- 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임되며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원총회 및 조합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3) 이사회

- 조합원총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결의·집행하기 위해 이사로 구성된 기관이며, 이사는 각자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 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 및 의결권을 가짐

(4) 감사

- 조합의 재산 사항 및 이사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조합원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또한, 감사는 위 사항을 조합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 감사)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함

라.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와 조합을 대표하는 각 2인 이상 10인 이하의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회사와 조합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의 결과를 약정으로 체결

### 3. 우리사주조합 기금

#### 가. 기금의 조성

- 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조합 기금의 재원은 ①회사, 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②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③차입금 ④조합 계정 보유 주식의 배당금 등 수익금 ⑤그 밖의 수입금이 있음
- 조합은 회사, 주주 및 다음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 한국증권금융
  -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 나. 조합의 차입

-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조합 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주체에 따라 조합원 상환 차입형과 회사 상환 차입형으로 구분

- 조합원 상환 차입형은 차입금을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자사주의 배정이나 의무예탁 등 그 관리가 조합원이 출연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
- 회사 상환 차입형은 회사의 상환 약정 및 보증 등으로 조합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조합계정에 배정·예탁한 후 회사가 무상출연한 자금으로 조합 차입금을 상환하고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 다. 기금의 사용

- 조성된 기금은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 및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어야 함
  - 회사가 상환하기로 약정한 조합 차입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상환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조합 차입금은 회사의 무상출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음
- 직전 회계 연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함

※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①적립 기금이 적어 조합원별 배정주식이 1주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상장 폐지가 확정되었거나 상장 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④비상장법인으로 유통 주식이 없어 매입수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하여 출자한 금전 등임

#### 라. 기금의 관리

- 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자사주 취득 전까지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적격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 마. 우리사주조합의 회계 관리

- 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와 같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운영 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조합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함

#### 4. 벌칙 규정

- 주무관청은 우리사주조합이 그 운영 등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부록 근로자복지기본법 별표 참조)

## 제2장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 1. 자사주의 취득

가.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자사주를 취득하여야 함

나. 자사주 취득 방법

#### (1)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 상장 또는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우선배정 받아 이를 청약하여 자사주를 취득함
-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증권거래법」에 의거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20%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 하여야 하며(조합원의 권리),
-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모집·매출 및 유상증자 주식의 20%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음(조합원의 권리는 아님)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통해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 : 당해 회사의 전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6월 이상 2년 이내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기본 구조

①정관변경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우리사주매수선택 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등을 정관에 기재

②권리부여 :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 다만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가능

- 권리행사 제공 기간 : 6월 이상 2년 이내

- 권리행사 기회 : 제공 기간 중 6월 또는 1년의 기간 단위로 행사 가능(제공 기간이 2년인 경우 최소 1회에서 4회까지 가능)

- 행사 가격 : 권리부여 시 평가 가격의 100분의 8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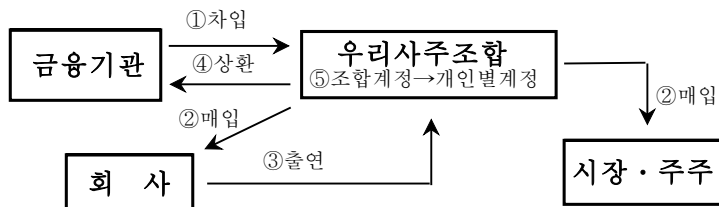
③권리행사(취득) :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차액 보상 불가)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권리행사에 응하는 경우에는 증가등기 등의 조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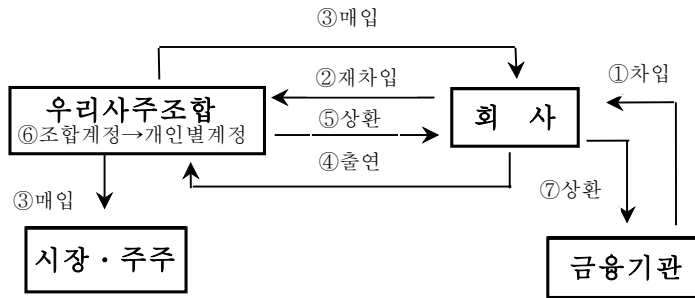
④예탁 및 인출 : 주주와의 이해 조정 및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1년간 의무예탁

(3) 시장매입 등에 의한 취득

- 조합원이 매월 일정금액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적립된 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과거 증권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거나 회사나 다른 주주로부터 장외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 또는
- 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시장이나 장외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출연한 기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
- 회사 상환 차입형에 의한 자사주의 매입 형태
  - 회사 상환 직접차입형 : 회사의 보증 등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회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금품으로 조합이 당해 차입금을 상환한 후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개인별계정으로 배정



- 회사 상환 간접차입형 :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합에 대출한 자금으로 조합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회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한 금품으로 조합이 조합 차입금을 상환하면 회사는 동 상환금으로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 조합은 상환 범위 내에서 즉시 자사주를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고 1년간 의무예탁



- 차입 한도 등

-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 총액 이내이어야 하며,
-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10에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을 곱한 금액 이내임.
-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잔여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 (4) 회사 등의 자사주 출연

- 회사 및 주주 등으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받아 취득

## 2. 자사주의 배분 및 배정

### 가. 주식의 배분

- 조합은 우선 배정 및 기타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를 장기근속 및 저소득 조합원이 우대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배분하여야 함

### 나. 취득 주식의 배정

#### (1) 개인별계정 배정

-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자사주(조합원 상환형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 포함)는 출연한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
- 회사, 주주 등이 출연한 자사주와 회사, 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당시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

※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회사 등이 현금을 출연할 당시에는 조합원이었으나 자사주 취득 이전에 사망, 장애, 정년,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배정

- 회사 상환형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로서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는 상환 당시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

## (2) 조합계정 배정

- 회사 상환형 조합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배정
- 조합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배정

## 3. 자사주의 예탁

### 가. 자사주의 예탁

- 조합은 취득한 자사주를 일괄하여 취득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함

#### ※ 취득 기준일

- 신주 발행에 의한 취득(우선배정, 신주 발행에 의한 우리스주매수선택권 행사) : 신주권 교부일
- 시장매입에 의한 취득 : 매입 완료일
- 조합원 이외 자의 자사주 출연 : 출연일

- 예탁신청서와 함께 예탁할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개서하여 조합장이 일괄하여 예탁

※ 예탁의 효력 : 예탁일자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경우 의무 예탁기간 산정의 기산점과 각종 세제혜택 부여의 기간 산정에 대한 기산점이 됨

#### 나. 예탁기간

-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자사주의 예탁기간은 취득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조합원 출연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자사주 및 금품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 회사 상환형 조합차입금으로 취득하여 상환된 자사주 : 1년

#### 다. 양도 및 담보 제공의 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조합이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대출 기관 또는 대출 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조합원이 자사주 매입 및 생활안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개인별계정의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4. 자사주의 인출

##### 가. 인출 사유

- 조합원이 개인별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음
  - 조합 해산 사유의 발생
  - 의무 예탁기간 만료
  -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조합원의 퇴직
    - 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 폐지의 신청
    -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지 1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자사주는 제외)
- 잔여 의무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 조합원의 사망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7급 이상의 장해 발생
  - 조합원의 정년 도달

-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위의 사유에 준한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이 가능함

#### 나. 인출 절차

- 조합의 대표자가 반환 사유별 명세서 및 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퇴직증명원 등)를 수탁기관에 제출하고, 예탁 주식을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함

### 5.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 가. 의결권 행사 방법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라 할지라도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조합장 명의로 등재되기 때문에 조합원 각자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은 조합장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합원이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①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받아 그 의사 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 ②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하여 당해 조합원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토록 하며

- ③ 위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의사 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함

\* Shadow Voting(그림자 투표) : 다른 주주의 의결 내용에 비례하여 자기의 의결권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 표시가 없거나 위임의 요청이 없는 주식 수를 차감한 주식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임

-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다음의 방법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하여야 함

- ① 위 조합원 개인별계정 의결권 행사 방법 중 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행사
- ②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 ③ Shadow Voting

#### 나. 배당금 등의 처리

##### (1) 배당금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배당(주식배당 포함)은 조합원에게 지급

-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주식배당 포함)은 조합에 귀속함. 조합에 귀속한 배당금은 회사가 상환하기로 한 차입금을 상환한 후 그 상환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거나 동 배당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회사 상환형 차입금을 최초로 상환하는 때에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함께 배정

(2) 유상증자의 처리

-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권리에 따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탁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만, 취득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하여야 함.
-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취득하게 되는 신주인수권은
  - 조합에 회사나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은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무상출연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음. 이 경우는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해당하므로, 예탁기간은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임
  - 조합에 회사나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출연 받은 기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금으로 청약하고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 1년간 예탁

-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청약 시 신주인수권의 조합원별 배  
분 방법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

### (3) 무상증자의 처리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 중인 자사주에 대한 권리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무상증자 주식은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  
는 개인별계정 주식의 잔여 예탁기간 동안 예탁해야 함
- ※ 다만, 잔여 예탁기간이 신주 교부일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은  
취득 즉시 조합계정으로 예탁한 후 당해 무상증자 권리  
를 갖는 조합계정 보유 주식이 개인별계정에 배정될 때  
합산하여 배정

## 6. 자사주의 환매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여 예탁한 자사주  
를 예탁기간 경과 후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음
-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조  
항이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이 자  
사주를 환매수 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가 사  
전에 가격 결정 방법, 시기, 적용기간 등을 합의하여야 함

### 제3장 주요 세제 및 금융 지원

#### 1. 주요 세제 지원 내용

##### 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 지원

(1) 시가와 취득 가액의 차액 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소득세법 제20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8항)

-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다만,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회사로부터 시가의 70% 해당액보다 저가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70%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출연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 조합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하여 조합에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즉, 조합원이 400만 원을 출연하고 출연 시점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였다면,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근

로소득을 정산하게 됨

- 그러나, 여기서 소득 공제는 완전한 소득 공제 제도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세 이연에 해당됨. 즉, 소득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추후 조합으로부터 인출 되는 때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된 금액으로 근로 소득에 합산 과세 됨(아래 (6) 참조)

(3) 회사·주주 출연에 의한 자사주의 조합원 배정 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3항)

- 회사, 대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된 자사주(출연금에 의한 매입 포함)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되면 그 배정 시점에 조합원은 배정 주식의 가액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동 소득금액을 과표로 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배정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조합원이 당해 배정 주식을 인출할 때 과세함

※ 일정한 금액 : 조합원이 당해 회사에서 직전 연도에 받은 연간 급여 총액의 20% 또는 500만 원 중 큰 금액

- 연간 한도는 회사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주 등의 출연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이러한 한도가 없음
- 동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된 자사주는 매입가액(회사 출연금으로 매입한 자사주) 또는 시가의 70%(회사가

직접 출연한 자사주)의 가액에 대하여 배정 당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함

(4) 인정이자 비과세(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자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조합원의 경우에도 그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음

(5) 배당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

-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1,800만 원(2008년말까지는 3,000만 원)까지의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①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을 것
- ②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함

(6) 자사주 인출 시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 6항)

- 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 중 취득 시 과세되지 아니한 자사주(소득공제를 받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및 회사 출연주식 중 조합원 배정 시 과세되지 않

은 자사주 등)는 인출시점에 조합원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인출하는 자사주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까지는 당해 인출 주식의 50% 비과세, 4년 이상의 경우에는 75%를 비과세 함

- 인출하는 자사주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출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함

※ 보유 기간 :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의무예탁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

#### 나. 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 (1) 조합에 대한 출연금 등 손비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됨

##### (2) 잉여금 처분 중 조합을 통한 성과 지급액의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순재산가액인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이 될 수 없으나, 회사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금으로 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조합에 대하여 성과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은 손비로 인정됨

(3) 조합운영비 지원금액 손비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회사가 조합 운영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됨

(4) 대여금 인정이자 익금 불산입(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정상적인 요율에 의한 자금운용에 비해 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인 요율에 해당하는 운영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됨

다. 조합에 대한 지원

-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2항), 조합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46조)

라. 주주 등의 조합출연금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 주주 등(조합원은 제외)이 조합에 대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기 바람

## 2. 금융 지원

### 가. 회사에 의한 지원

-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해 줄 수 있음
- 또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음
-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조합으로 하여금 동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게 한 후, 회사가 매년 일정금액을 조합에 무상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할 수 있음(회사 상환 차입형)

### 나.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국증권금융 등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규정된 적격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상환 약정 및 보증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회사가

무상 출연한 자금으로 조합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

#### 제4장 우리사주제도 운영 현황

##### 1.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2007. 12. 31현재)

구 분		상장법인	코스닥법인	기타법인	계
설립조합수(A)	개소	660	831	1,159	2,650
대상기업수(B)	사	745	1,022	327,344*	329,111
설립률(A/B)	%	88.6	81.3	0.4	0.8
조합원수	명	759,062	108,839	213,220	1,081,121

※대상기업수 중 기타법인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주식회사 수에서 기준일 현재 상장법인 및 코스닥법인 수를 차감하였음.

##### 2. 우리사주 주식 예탁 현황

(2007. 12. 31현재)

구 분		상장법인	코스닥법인	기타법인	계
예탁조합수	개소	174	259	467	900
예탁조합원수	명	207,505	19,179	56,035	282,719
예탁주식수	백만주	277	59	107	443
예탁주식취득가	억원	36,815	3,029	4,699	44,543
예탁조합지분율	%	2.3	1.4	3.0	2.2

3. 연도별 제도 운영 현황

(연도말 기준)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설립조합수 (개소)	1,546	1,861	2,036	2,136	2,259	2,376	2,514	2,650
예탁조합수 (개소)	752	752	793	772	766	808	855	900
예탁주식수 (백만주)	421	288	325	312	308	301	316	443
주식취득가 (조원)	3.60	1.85	2.97	2.81	2.96	3.29	3.85	4.45

## 제4편 질의·응답(Q&A)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3. 우리사주조합 기금
4.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5. 자사주의 배정 및 배분
6.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7. 의결권 등 권리 처리
8. 기타 사항

## 제4편 질의·응답(Q&A)

###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 Q1-1. 모든 법인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까?

---

-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Q1-2.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

-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주체는 당해 회사 근로자입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회사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 당해 회사와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우리사주조합 설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Q1-3.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가장 먼저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가입 자격을 가진 전체 근로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 동 준비위원회는 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조합의 규약(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모집을 위해 제도에 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합니다.
  
-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총회 개최 후 3주 이내에 한국증권금융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3주 이내에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업무는 종결되며,
  - 조합 설립 중의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설립 후의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 됩니다.

---

**Q1-4.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한국증권금융과 반드시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

- 그렇습니다.
  - 준비위원회와 한국증권금융이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법정절차의 한 단계이므로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

**Q1-5.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계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①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 임원)
      - ②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
      -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
      - ④ 증권거래법 제2조제20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 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관계회사란 지배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와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손자회사)를 말

함.

- ※ 일정한 요건이란 자회사나 손자회사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고,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이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조합에 가입할 것을 동의한 경우를 말함.

---

**Q1-6.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

-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Q1-7.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

- 근로자는 서면에 의한 가입 의사를 조합에 표명함으로써 조합 가입 결정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며, 이후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

**Q1-8.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성격은?**

---

-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이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 Q1-9 우리사주조합 규약의 효력과 그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은 조합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자치규약으로서 그 내용이 법령상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 및 조합원을 구속하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규약에 위반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규약의 개정은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2.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

### Q2-1. 조합원총회와 대의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

- 조합원총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 ① 조합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우리사주조합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

## ⑥기타 중요한 사항

- 우리사주조합은 필요한 경우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조합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의원회가 우리사주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의원회는 회사의 조직이 대규모이거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조합원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간이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와 병존합니다.

---

### Q2-2. 조합원총회는 언제 개최하여야 합니까?

---

- 조합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 임시총회는 전체 조합원 1/5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3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기타 규약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 개최합니다.

---

### Q2-3.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

-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사·감사)은 조합원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 대의원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방식에 의하여 선출된다는 점에서는 조합 임원 선출 방식과 동일하나 조합원총회

가 아닌 사업장, 부서, 직급 등 대의원 선임 단위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 **Q2-4. 우리사주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

- 우리사주운영위원회란 회사와 조합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을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각 2인 이상 10인 이하)으로 구성되는 임의적 기구입니다.
  - 회사와 조합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통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그리고, 위원회의 협의결과는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 **Q2-5. 조합의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 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자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보관하여야 하며
  - 기금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한국증권금융, 은행,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 조합원 개인별계정이란 조합원별로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소유권이 인정된 재산의 관리단위를 의미하며, 조합계정이란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의 조합 공동소유재산의 관리단위를 말합니다.

※ 또한, 조합은 회계장부 및 주식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부속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3. 우리사주조합 기금

---

#### Q3-1. 조합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며,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

-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조합 명의)차입금
  4.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배당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 우리사주조합은 조성된 기금을 출연 주체별로 조합원 출연분과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연분으로 구분하여 조합원 개인별 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각각 관리하여야 하며, 동 기금은 자사주 취득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

#### Q3-2. 우리사주조합기금은 특정된 사용기한이 있습니까?

---

-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 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조성된 기금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자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하며, 금전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다만, ①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주식수가 1주 미만인 되는 경우 ②당해 회사가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③당해 회사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④당해 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매입 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해 출자금을 적립한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합니다.

---

**Q3-3. 조합 기금을 조합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지와 조합 운영비의 조성 가능성 여부?**

---

- 조합 기금은 자사주 취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조합 기금과는 별도로 조합 운영비를 조성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

**Q3-4. 조합원이 기금에 출연한 금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

-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지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조합기금에 출자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4.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

##### Q4-1.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우리사주조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우선배정 받은 주식의 취득 :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우선배정 받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이를 청약하여 취득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권리 행사에 의한 취득 : 조합원이 급여 공제나 출자한 금전으로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통하여 회사로부터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취득
- 3. 자사주 무상 출연에 의한 취득 : 회사나 주주 등이 조합에 자사주를 무상으로 출연 받아 취득
- 4. 시장 매입이나 장외 매입에 의한 취득 : 조합이 적립된 기금으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매입하거나 이들 시장 이외에서 대주주나 조합원의 인출 주식을 우선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

---

##### Q4-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을 우선배정이라 합니다.
- 상법 제418조는 “주주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정관의 정함이 있어야 함.
-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상장예정법인의 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 코스닥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습니다.

---

**Q4-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조합은 배정 받은 신주인수권을 규약의 배분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일정 기일까지 청약을 권유하고, 신주인수권을 배분 받은 조합원은 청약의 가부 및 청약 수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과 함께 조합에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합은 조합원별 청약을 합산하여 조합의 명의로 주간사 청약처 또는 회사가 지정한 주금납입은행에 청약증거금을 납부하

면 주금 납입일 익일부터 주주가 됩니다.

---

**Q4-4.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또는 예탁될) 자사주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은 자사주 취득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또는 예탁될)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이 예탁된(또는 예탁될)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담보제공 요건 충족을 위하여 사전에 한국증권금융과 동 자사주의 담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

**Q4-5.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언제까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합니까?**

---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괄하여 그 취득 방법에 따라 다음의 취득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①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신주권 교부일 ②회사·주주 등의 양도 : 주권 양수일 ③주식시장 매입 : 시장매입 완료일 ④회사 등의 자사주 출연 : 출연일 ⑤기타의 취득 :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
-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취득 주식을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예탁한 날로부터 1년(회사·주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인출할 수 있으므로 빨리 예약할 수록 인출가능 시기도 빨라집니다.

- 특히,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의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주권을 신속히 발행·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355조 및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당해 회사의 이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5. 자사주의 배정 및 배분

---

### Q5-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언제 조합원에게 배정되니까?

---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재원과 취득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배정 시기가 다르며 그 배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주식과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매입한 자사주 또는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주식은 매입 또는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다.
  2. 회사 상환형 조합 차입금으로 매입한 자사주와 조합계정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주식은 차입금 상환액 한도 내에서 상환

즉시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다.

## 6. 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

### Q6-1.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할 주식의 범위는?

---

-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와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합니다.
  - 다만, 개인별 계정에 예탁 중인 주식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에 청약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예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무상증자 주식은 당해 무상증자의 권리를 갖는 예탁 주식의 잔여 예탁 기간이 무상 신주 교부일을 기준으로 3월 이내인 경우 당해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주식은 예탁의무가 없으며,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주식은 의무예탁 대상입니다.

---

### Q6-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 예탁 기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 의무예탁기간의 산정은 ①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즉시 배정되어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②조합계정에 보유 중이던 주식은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이체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 이 경우 “1년 이상 예탁”에 따른 인출일은, 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 되므로 “1년이 경과된 후 예탁 응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

### Q6-3.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예탁 시 주권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합니까?

---

○ 우리사주조합은 상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일괄 예탁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주권의 종류는 조합원별 소유량 및 퇴직에 의한 중도 인출 등을 감안하여 권종별로 적절히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주권의 양식은, 통일규격 주권과 비통일규격 주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일규격 주권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려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권(통일규격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형태이며 명의개서 대행기관(증권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대행업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주권입니다. 비통일규격주권이란, 통일규격 주권과는 달리 비규격 양식의 주권을 말합니다.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자사주의 형태는 통일규격과 비통일규격에 관계 없이 예탁할 수 있습니다.

---

**Q6-4. 조합계정 보유 주식은 어떤 절차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됩니까?**

---

-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주식을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려면 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증권금융에 계정간 이체(조합계정 → 조합원 개인별계정)를 신청하여야 하며
- 한국증권금융은 조합이 신청한 배정 명세표에 따라 조합계정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이체 처리함으로써 배정이 완료됩니다.

---

**Q6-5.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형식상의 퇴직도 예탁주식 인출 사유에 해당됩니까?**

---

-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 기간의 단절이 없이 단지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상의 퇴직은 예탁 주식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예탁 주식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Q6-6.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조합원의 주식은 어떠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습니까?**

---

-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의무예탁기

간 만료 또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만 인출 가능합니다.

- 다만 의무 예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①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②법령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경우 ③상장법인으로서 상장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 폐지 신청을 한 경우 ④상장법인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인출할 수 있으며
-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주식은 조합원의 사망, 장해, 정년, 경영상 해고 등의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단지 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사유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

**Q6-7. 우리사주조합원이 직접 한국증권금융에 자사주를 예탁하거나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습니까?**

---

- 할 수 없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하며, 인출 사유의 발생으로 예탁된 주식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조합에 인출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당해 조합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Q6-8.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한 주식을 재예탁할 수 있는가요?**

---

-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상의 인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증권 금융으로부터 인출된 주식은 재예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 주식은 더 이상 법령상의 우리사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우리사주로서의 세제 혜택도 상실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제상으로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일정 기간 이상 예탁한 주식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당소득세 감면 : 1년
  - ※ 소득세 감면 : 의무예탁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4년 예탁 시 과세 대상의 50%, 4년 이상 예탁 시 과세 대상의 75% 비과세

## 7.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

### Q7-1. 보유 중인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

- 보유 중인 우리사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와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조합 대표자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대하여 공지한 후

- ① 조합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를 받아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하거나,
  - ② 조합원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조합의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합원이 직접 행사하거나,
  - ③ 조합원의 의사 표시 또는 의결권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 참석 주식 수에서 의사 표시(또는 위임 요청)가 없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함(Shadow Voting)
- 조합계정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법 : 다음 방식 중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가 행사
- ①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 중인 주식으로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 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행사
  - ② 당해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 수에서 조합계정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행사
  - ③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 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

**Q7-2. 조합계정 및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 중인 자사에서 발생한 주식배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에서 발생한 배당 주식은 즉시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조합계정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서 발생한 배당 주식은 조합 계정에 귀속되며, 이 배당 주식은 회사 상환형 차입금의 상환으로 최초 도래하는 계정이체(조합계정 → 개인별 계정) 시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게 됩니다.

## 8. 기타 사항

---

### Q8-1.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까?

---

-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 해산하게 되며, 임의 해산은 불가능합니다.
  - ① 당해 기업의 파산
  - ② 사업의 폐지를 위한 당해 기업의 해산
  - ③ 사업의 합병·분할·분할 합병 등을 위한 기업의 해산
  - ④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 ⑤ 휴면조합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조합 해산에 대해 의견 조회를 하였음에도 1월 이내에 존속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 휴면조합 :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기금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조합

---

**Q8-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기업이 환매수할 수 있습니까?**

---

- 가능합니다.
- 상법 제341조의 규정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자기회사주식을 매입할 수가 없으나,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자사주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  
에 당해 회사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  
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  
니다.

# 부 록

## I. 관련 법규

1. 근로자복지기본법 ·령 ·규칙
2. 증권거래법 ·령

## II. 표준 규약

## I. 관련 법규

### 1. 근로자복지기본법·령·규칙 초록

## II. 표준 규약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은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사주”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2. “관계법령”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 법률과 그 시행에 관한 영 및 규칙 등을 말한다.
3. “조합계정”이라 함은 조합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4. “조합원 개인별계정”이라 함은 조합원의 권리 또는 지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거나 조합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7. “관계회사”라 함은 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와 당해 비상장 회사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를 말한다.

제3조(목적)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도모

2.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를 통한 재산 형성 촉진 및 주인의식 제고
3.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보유 지원
4. 조합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5.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 출연 자산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
6. 조합 재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②조합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4조(조합의 운영) 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5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 )에 둔다.

제6조(공고의 방식) 조합의 공고는 당해 사무소에 게시하고,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회사 내 열람의 방식으로 한다.

## 제 2 장 조합의 운영

제7조(조합원) ①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제9조 제5호의 결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배정 받은 자사주와 우리스주매수

선택권에 한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회사 또는 관계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주주에 한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4. 회사의 최대 주주 및 그의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②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 )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8조(조합원총회)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이 없는 경우 제31조제2호의 운영상황 보고서를 공고함으로써 정기 조합원총회의 개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조합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전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3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총회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다.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⑤조합원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하며,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결의사항) 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조합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합장 등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관계회사 근로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조합장 등 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장) ①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이사의 직을 겸임하며, 조합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2. 전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며 총회 및 이사회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3.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된다.
4.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조합장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③조합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조합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 )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1. 회사와 조합 간의 약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사주의 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합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및 조합원을 위한 담보제공, 연대보증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②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 )인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이사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①조합은 조합장 및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1. 조합의 회계와 업무 감사
2.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3.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
4. 이사회에 대하여 조합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관한 보고 요구
5. 정기 총회에 감사 결과 보고

②감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총회 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대의원회) ①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 이사, 감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의 개최·소집, 결의방법 및 기타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대의원회”로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③대의원은 ( )별로 조합원 수 ( )명당 1명, 단수 조합원이 ( )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을 추가한 인원을 각( )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소유 주식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①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의결권은 관계법령의 정함에 따라 행사한다.

②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자사주의 의결권은 ( ) 행사한다.

### 제 3 장 재산의 운영 및 관리

제15조(조합의 재산 관리) ①조합은 조합의 재산을 조합원 개인 별계정과 조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조합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6조(조합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①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조합원 상환 조건의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수익금
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가 출연한 금품 및 그 수익금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차입금 및 그 수익금
4. 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및 그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②조합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조성된 조합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 만큼 이를 제외한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립된 기금이 적어 자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주식 수가 1주 미만인 되는 경우
2. 자사주의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상장 폐지 신청을 한 경우
3. 자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4. 자사주가 상장되지 않아 매입 희망 수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조합은 조합원이 탈퇴(자격 상실을 포함한다)하거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합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는 조합기금은 당해 조합의 출자분과 그 운용수익 상당액으로 한다.

제17조(자사주 취득자금 등의 차입) ①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 회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은 당해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예탁 자사주 중 근로복지기 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 의무 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자사주에 한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사주의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잔여 의무 예탁 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또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채무부담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별 채무액의 내역을 작성·날인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 및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입금의 상환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이상이 분할 상환되도록 회사 및 주주 등 상환 약정자와 서면에 의해 약정할 것
2. 1회계연도의 차입금액은 차입일 현재 조합원의 직전 회계연도 급여 총액의 10%에 당해 차입금의 차입 기간을 곱한 금액 이내이고, 차입금 총액은 차입일 현재 조합원의 직전 회계연도 연간 급여 총액 이내일 것
3. 차입 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잔여 차입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
5.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의 담보권 해지를 조건으로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것

제18조(주식취득의 방법 및 절차)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 취득
  - 가. 우선배정 주식의 청약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
  - 나. 회사·주주 및 시장으로부터의 매입
  - 다. 조합원 개인별계정 및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취득 등
2.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제4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

되어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5호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

3.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회사·주주 및 시장 등으로부터의 매입에 의한 취득

②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여 인수 또는 매입의 청약을 하여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을 위한 금전을 조합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이미 출연하여 적립된 조합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 청약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사주 인수 및 매입의 청약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자사주를 인수하거나 매입한다.

④조합이 조합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9조(취득자사주의 배분 기준) ①조합은 우선배정된 주식, 우리스주매수선택권, 무상출연 주식 등 자사주 취득 권리 및 취득 자사주를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배분하되, 저소득 조합원 및 장기근속 조합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출연(회사 또는 관계회사 상환 약정 차입금을 포함한다)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각각 구분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당해 조합원에게 자사주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조합원 출연금을 제외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거나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원 출연에 의한 조합기금으로 청약하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제191조7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 받는 주식의 배분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한도, 누적적 취득한도 및 동일업종 합산 취득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배분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여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자사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일) ①조합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와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출자한 조합원 또는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②조합은 회사·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무상출연 자사주 및 제16조 제1항 제2호·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 즉시 취득일 현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원 조성일 현재의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일 전에 제21조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도 자사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으로 보유한 후 차입금 상환 즉시 당해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자사주(무상증자 주식 포함)를 상환일 현재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

정한다. 이 경우 상환 배정 전 조합계정 보유 자사주의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주식배당을 포함한다)는 당해 자사주 취득 후 최초의 상환 배정주식에 전량 합산하여 배정한다.

제21조(배정 자사주의 회수) 조합은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자사주(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다)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자사주와 회수된 후 당해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

1. 사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애 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의 발생
3. 정년 도달
4.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5.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

제22조(자사주의 예탁) ①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계정과 조합원 개인별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합 명의로 수탁기관에 예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자사주의 무상증자 신주로서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예탁 자사주의 잔여 예탁 기간

이 무상증자 신주 교부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당해 무상증자 신주

2.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 중인 자사주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자사주
3. 조합원 개인별계정 예탁 자사주에 대한 주식 배당으로 취득한 자사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1년
2. 회사, 주주 등 조합원 이외의 자의 자사주 무상출연 및 제16조 제1항 제2호·제4호(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어 조합계정에 보유 중인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 : 4년 이상 8년 이내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3.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16조 제1항 제3호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조합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 및 그 수익금에 한한다)의 재원으로 취득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한 자사주 : 1년
4.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예탁된 자사주의 무상증자로 취득한 자사주 : 당해 무상증자 권리를 갖는 자사주의 잔여 예탁 기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정에 예탁한 자사주는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거나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다.

제23조(자사주의 인출) ①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예탁한 자사주는 제22조 제2항의 예탁기간이 경과하거나 관계법령에

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②예탁한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당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인출요청에 따라 인출한 자사주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4조(인출자사주의 우선매입) ①조합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출한 자사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 인출 전일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의 최종 시세가격(최종 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인출 당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수 가격을 참작하여 인출 조합원과 합의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출 자사주에 대한 우선매입 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할 수 없으며,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와 우선매입 가격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출 조합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다.

제25조(배당금 등) ①조합은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배당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령 즉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②조합은 조합계정으로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조

합에 귀속시킨다.

제26조(회계처리 등) ①조합의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를 따라 매년(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은 관계법령 및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 발생 사실을 회계처리 한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①조합 이사회는 예산서(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서(사업계획서)가 의결되지 못한 경우 총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③이사는 정기총회일 2주일 전에 제2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감사는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게 각각 제출한다.

#### 제 4 장 보 칙

제28조(우리사주운영위원회) ①조합은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자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선임한 ( )인 으로 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약정으로 체결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1. 조합원 명부
2. 조합 규약 및 회의록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성명과 주소록
4. 회계 장부 및 서류
5. 조합 및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고 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3. 자사주 배분 및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31조(보고 의무) 조합은 다음 각호의 정한 사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4항에 의하여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의 보고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의한 그 운영 상황의 보고

제32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파산
2. 사업 폐지를 위한 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 합병에 따른 회사의 해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1. 조합원계정의 자사주 및 조합원 출연 기금 :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
2. 조합계정의 자사주 및 제1호 이외의 기금 : 제19조의 배분 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조합원에게 귀속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재산 :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

제33조(관계법령의 준수의무) 조합은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관 및 경과조치) ①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때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로부터 제반 사무를 이관 받도록 한다.

②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우리사주조합의 행위로 본다.

---

---

##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

2002년 12월 일 초판 발행  
2006년 3월 일 정정판 발행  
2008년 7월 일 정정판 6판 발행  
발행인 : 박 성 찬  
편집인 : 정 규 철  
발행처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전화번호 (02)3770-8800  
인쇄인 : 홍 필 순  
디자인인쇄처 : 디자인세륜 ☎2273-5167

---

---

《비매품》

<무단 전재 복사 금지>

## ◆ 증권담보대출

고객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드리는 재테크 상품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	개인 및 법인
대출 한도	개인 : 150억원(인터넷대출 : 10억원) 법인 : 300억원
대출 이율	변동금리(CD 91일) 연 6.62% 이상 고정금리(통안채 364일) 연 7.67% 이상 * 담보 및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
이자 납입	월 단위 후취 (자동이체 가능)
대출 기간	1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담보 비율	110%이상 (대용가격 기준, 차주 신용에 따른 우대)
담보 증권	상장주식, 채권, 수익증권, 후순위채권, CD <b>비상장주식, 보호예수주식, 스톡옵션주식 등</b>
장 점	취급수수료 無, 중도상환수수료 無 無방문, 無서류, 無수수료 인터넷(ebank.ksfc.co.kr) 대출( <b>인지세 면제</b> ) * 담보증권 인터넷 매도서비스

##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우리사주제도 지원 금융기관으로서 우리사주조합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 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양수, 증권시장에서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하여 드립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대출 한도	1인당 1억원 이내(단, 당사가 정하는 등급 이상의 경우 취득금액 전액)
대출 이율	6.5 ~ 8.5% (담보 및 신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설정 가능)
담보 비율	100% 이상 (전일 증가 기준)
담보 증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
상환 방법	원금 - 월단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이자 - 월 단위 후취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연장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무예탁기간(1년)경과 후 담보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상장회사에 한함)	

◆ 영업점 현황

영 업 점	위 치	전화 번호	FAX 번호
본 점	영등포구 여의도동	02) 3770-8818	02) 3770-8789
명동 지점	중구 명동	02) 778-2913	02) 778-4716
강남 지점	서초구 서초동	02) 548-4691	02) 3481-7597
부산 지점	부산진구 부전동	051) 808-0239	051) 808-0981
광주 지점	동구 대인동	062) 225-7671	062) 225-7670
대구 지점	수성구 범어동	053) 741-4111	053) 742-1783
대전 지점	서구 둔산동	042) 488-2200	042) 486-3895
분당 지점	분당구 정자동	031) 713-4300	031) 713-4334
<p>※ 정확한 영업점 위치는 홈페이지(<a href="http://www.ksfc.co.kr">www.ksfc.co.kr</a>) 회사 소개를 참조하십시오.</p>			